제 안 설 명 서

【영주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영 주 시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198

제출년월일 : 2001. 6.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상태를 현재의 환경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본 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 창조를 위하여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 피해 유발시 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각종 사업 시행시 환경보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검토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아.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환경보전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자료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차.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지역환경개선에서 부족되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환경보전의 광역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3. 재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가.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 사본 1부.

나. 관련법령(발췌)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②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주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검토) ①시장은 시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의회 의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시의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영주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⑨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민참여)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환경단체의 환경활동 촉진) 시장은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장은 환경상태를 적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

가. 일반원칙

○ 환경기본조례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국가의 환경법등 관계법령과 환경정책방향에 부합되어야 하며, 여타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벌칙 또는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할 수 없음

○ 전국적으로 설정된 환경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환경기본조례에서 이와 다른 그 지역의 환경실정에 맞는 지역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준은 반드시 전국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어야 함

○ 환경기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미 환경관련법령등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규정하여야 함

나. 조례의 편제

「총칙」부분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부분으로 나누어 조문을 배열하되 조례에 담길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를 감안하여 3~5개의 장으로 편성

다.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ㅇ 자치단체의 책무 : 당해 자치단체와 그 하위 자치단체가 지역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

ㅇ 사업자의 책무 :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
- 각종 환경법령 및 자치법규의 준수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의 환경친화적 개선
-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사업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공개
-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 및 지역사회활동에의 협조

ㅇ 주민의 권리 및 책무 : 주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따른 책무를 규정
-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의 생활화
-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

ㅇ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

ㅇ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지역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한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

ㅇ 지역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10년 주기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의 설정
  -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전문가등의 의견 수렴

○ 대기오염경보제 시행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환경시설의 정비 :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등의 입지확보와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강구

○ 정보의 공개 :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규정 :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

○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 지역 환경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그 개선을 위한 연구의 실시

○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원 및 예산범위내에서의 재정지원

ㅇ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ㅇ 자연환경의 보전

-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함
  ·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등 녹지공간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의 개발 및 지역별 자연생태계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방안 수립

ㅇ 환경백서에 관한 규정 : 지역의 환경현황과 그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서로서 매년 환경백서를 작성

ㅇ 지방의회에의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라. 조례의 내용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유의를 요하는 규정

ㅇ 지역환경기준 및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준설정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환경현황의 감시·측정 : 지역내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망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되 국가환경측정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ㅇ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부담금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성금 또는 기부금등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지구환경보전등 국제협력시책의 추진 : 본질적으로 국가의 고유사무이므로 관계법령 및 정부시책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함

ㅇ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별로 지방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자문기구설치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환경기본조례 모범례 : 별첨

※ 모범조례안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도에서 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시"를 "도"로, "자치구"를 "군"으로 대치하면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안 모범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자치구(또는 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제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보고) ① 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치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자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영향검토) ① 시는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규제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위원회의 설치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시 및 자치구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시민참여)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시는 자치구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췌)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 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10연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4조의2【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연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제14조의3【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①시·도지사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6조【환경보전위원회】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②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①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례 명 : 영주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 제283호(2001년 4월 9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1년 4월 9일 ~ 2001년 4월 30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98호

○ 의 안 명 :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2. 제안이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상태를 현재의 환경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본 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 창조를 위하여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 피해 유발시 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마.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각종 사업 시행시 환경보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검토 실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아.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15조)

자. 환경보전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자료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

차.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카. 지역환경개선에서 부족되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타. 환경보전의 광역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적인 협력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6조)

4.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양호한 환경상태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안 제2조)
-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6조)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안 제10조)
-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
-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안 제24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 영위와 미래세대에의 계승을 위한 것이고

○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환경 67010-259]에 의한 모범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였고

○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1. 6.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